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의 경험*

Study on a Categorical Basic Income at a low level:
Experience of th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서정희** · 이지은***
Seo, Jeonghee · Lee, Ji-eun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청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기본소득 |
| II. 연구 설계 | V.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가능성 |
| III.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 VI. 결론 및 제언 |

〈요 약〉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

* 본 연구의 인터뷰는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외(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효과분석(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함께 설계하고, 논의하고, 고민한 조문영, 조민서, 김지현 선생님께 감사를 전한다. 이 인터뷰는 두 편의 논문으로 작업되었다. 본 연구는 위 보고서 중 필자들이 서술한 부분을 대폭 수정한 것이고, 다른 한편의 논문은 조문영 외(2021)로 출간되었다.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주저자), E-mail: sjh@kunsan.ac.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교신저자), E-mail: rosmari7@cau.ac.kr

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이는 한국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시행이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42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28회의 개별인터뷰와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그간 한국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 둘째, 청년이라는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제도의 정당성 논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청년 범주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고 내면화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요소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청년이라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그리고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보다 부분 기본소득이 이행 가능성을 더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한다.

핵심용어 :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무조건성, 개별성, 보편성, 이행 가능성

I. 문제 제기

기본소득이 사회 곳곳에서 호명된다. 코로나19의 위협의 일반화와 이중화(안효상·서정희, 2020)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촉발시켰고,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강 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발표하면서 특정 정당에 한정되지 않는 검토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제기된다. 이러한 호명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이 먼 훗날의 막연한 대안이 아니라 현실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적어도 기본소득을 현실 정책으로 고민하자고 제안될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할 터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세계 어느 곳에서보다 뜨겁게 제기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외국에서의 기본소득 시도는 그 최대치가 기본소득 실험인 반면, 국내에서의 기본소득 시도는 낮은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한정된 지역 범위에서, 한 개 연령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도화된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서정희·노호창, 2020). 정책 실험은 여러 반대와 위협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장 제도화하여 실현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므로, 제도화 전에 실험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미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반면 제도화된 정책은 효과가

낮다고 하여 실행하지 않거나 즉각적인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제도의 경로의존성 측면에서 제도는 시행되는 것보다 폐지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속성은 기본소득 논의가 한국에서 더 뜨겁게 제기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현재 진행 중인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등은 기본소득 실험이 아닌 정책화된 제도이거나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예정인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화된 기본소득 제도들은 모두 급여 수준이 낮고, 연령이나 직업 등의 범주로 제한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갖는 난점은 급여 수준과 급여 대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5가지 속성(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지속성, 현금성)에 충분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2016년 총회에서 격렬한 충분성 논쟁을 통해 충분성 요건은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기본’이란 기본적인 경제 보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이러한 수준이 보장되어야 기본소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김교성 외, 2018). 기본소득의 효과로 기대되는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강화나 임금과 근로조건 보호 등의 노동시장 효과(Offe, 2008; Standing, 2011, 2013; 스탠딩, 2018), 노동시장이나 가정 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 강화(Wright, 2005; Handler and Babcock, 2006; Offe, 2008; 라이트, 2010; Widerquist, 2013; 스탠딩, 2018; 스티븐·크래비츠, 2019; 카사사스, 2020), 생존을 위한 노동이 아닌 자유롭고 유의미한 활동의 선택(Forget et al., 2016; 스탠딩, 2018; 카사사스, 2020) 등은 모두 기본소득의 충분성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야기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카사사스, 2020).

다른 하나는 급여 대상이라는 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기본소득이 혁명적 이행경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과도기적 기본소득/전환적 기본소득이라는 단계별 이행 전략을 상정하게 한다(김교성 외, 2018). 부분 기본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이 기본소득의 이행 경로로 제기된다(판 파레이스·판데르보우트, 2018). 기본소득의 이행 경로로 범주형 기본소득을 설정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및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난점이 있다(안효상 외, 2020: 27~32). 첫째, 특정 집단에게 기본소득을 먼저 시작하게 될 때 특정 집단의 어려움이 부각되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원리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안효상, 2019: 8). 둘째, 범주형 기본소득은 대상의 특정화 단계에서 대상 간 차별성을 강조하는데 힘을 실기 때문에 차별성에 대한 강조가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성 획득에 걸림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범주형 기본소득의 수급자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을 상상하거나 다른 집단과 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연구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들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가? 둘째,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경로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상하게 하는가? 그동안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 범주형 기본소득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범주형 기본소득을 수급하는 주체가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하여 사고실험이 아닌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 세계적으로 범주형 기본소득 실현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연구대상 제도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정하고, 이 제도를 경험한 청년들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그 전신이었던 성남시 청년배당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이 일부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남시 청년배당을 지급받지 못한 인근 지역의 청년들과 비교하여 성남시 24세 청년들의 더 높은 노동시장 성과로 귀결되고(윤혜린·오민홍, 2021), 성남시의 지역경제적 효과와 성남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의 근로동기, 경제활동, 주거, 경제적 상황, 행복, 건강과 식생활, 관계와 여유, 시간 사용, 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 등에서 변화가 존재하고(김종진 외, 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있는 가구의 부모세대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가 예측되고(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수급으로 만족도가 증가하고(유영성 외, 2019a, 2019b), 보다 종합적으로 행복, 건강과 식생활, 인식과 태도, 근로동기를 포함한 경제활동, 꿈자본 등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영성 외, 2019c,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행복과 만족도, 근로동기 및 노동시간, 식생활, 관계, 사회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 자체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초점과 방향을 달리 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이 짧게나마 언급된 소수의 문헌들이 존재한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수급받은 청년들의 창업 의향과 새로운 시도 의향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이선영 외, 2020), 정책피드백 이론에 근거한 정치적 태도와 증세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정종원 외, 2020)을 제시하면서, 급여 수준이 낮은 점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들 연구 역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가 본질적인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며 결론과 해석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초점과는 다르다.

외국의 경우 범주형 기본소득의 실현을 경험하지 못하였으며, 기본소득 수급 주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는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실험에 국한되어 있다. 주

요 질적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Blomberg, Kroll, & Tarkiainen(2021)은 2017년~2018년 실시된 핀란드 실험에 참여한 81명을 인터뷰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핀란드 실험의 목적이 노동공급 효과인 만큼 양적 연구가 말하지 못하는 수령자의 경험을 한나 아렌트의 3가지 노동 유형에 의거하여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참여한 대단위 인터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석은 아렌트의 활동유형(labour, work, action)과 관련한 연구 참여자의 언급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다. Hamilton & Mulvale(2019)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진행된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본래 실험은 3년으로 시작되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수당 정부가 승리한 후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됨)에 참여한 수급자 5명을 인터뷰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부조 프로그램 경험과 기본소득 수급 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는 이전에 사회부조를 수급했으면서 동시에 기본소득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복지급여의 조건성은 수급자에게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 기본소득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대상자 수가 5명에 불과하고, 전화 인터뷰라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 실험의 질적연구로서 가장 유의미한 연구로는 인도의 빈곤한 농촌지역인 마디아 프라데시 주의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것이다. Davala, Jhabvala, Mehra, & Standing(2015)에서는 기본소득을 수급한 100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수입과 지출, 영양, 건강, 교육, 저축과 부채, 노동 등의 영역에서의 기본소득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국외 질적연구들은 모두 기본소득 실험을 통한 기본소득 급여 수급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와 관련하여 양적연구가 담지 못한 보다 심도 있는 효과 및 영향을 보여주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분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들이 범주형 기본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다룰 수 없다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설계를 설명한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설명한다. 또한 특정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대대표되고 있다는 청년담론에서의 문제의식들을 반영하여 연구참여자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수급한 청년들의 범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왜 그렇게 선택하였는지 서술한다. 3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참여자들이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 수급을 통해 ‘기본소득’으로의 무조건성과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이라는 특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였는지 분석한다. 4장과 5장은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선택한 범주로서의 ‘청년’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범주였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청년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에서의 청년의 삶과 청년 정책으로

서 청년기본소득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수급 경험을 통해 충분한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을 상상할 수 있는지, 그러한 이행을 지지하는지 분석한다.

II. 연구 설계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 4월 1일에 시작되었다. 청년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이다. 지급 방식은 시·군의 전자카드 및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사용범위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용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매장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연령과 거주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전액 수급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5가지 정의 요건(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면, 무조건성, 개별성을 충족하고, 현금성은 일부 제한적이지만 충족하고, 정기성은 분기별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정기적 지급이라는 면은 충족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 제한으로 인해 정기성의 하위 속성인 지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서정희·노호창, 2020).¹⁾ 정기성과 현금성에 대한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 중 대부분은 충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24세 청년에게만 한정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보편적이지 않고 특정 인구 집단에 제한되는 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으로 개념화된다(판 파레이스·판테르보트, 2018: 360).²⁾ 이런 점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에 해당한다. 또

1) 지역화폐의 준현금성이 현금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기본소득의 현금성 원칙은 ‘현물’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라는 특성이므로 현금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논의는 서정희·노호창(2020: 44-46) 참조.

2)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과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은 개념적으로 다르다. 범주형 기본소득은 특정 범주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서 보편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본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 장년기본소득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부분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되, 급여 수준이 낮은 기본소득을 의미한다(Fitzpatrick, 1999). 두

한 기본소득의 정의 요건은 아니지만, 중요한 원칙으로서 충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 경험이 기본소득의 요소를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가라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모두 수급한(총 4회, 100만 원) 청년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동시에 연구참여자 청년의 범주를 다각화하여 구성하였다.

연구진이 인터뷰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들 여러 범주로 선정한 것은 최근 청년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겪는 다차원적 불평등과 고층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에 대한 연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김홍중, 2015; 조문영, 2018; 한승헌 외, 2017; 이승윤 외, 2017; 이철승, 2019; 변진경, 2018 등). 사회적 아젠다로서 청년 세대에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고, 청년 담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청년 세대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제기가 단일 집단처럼 제기되거나 특정 범주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초기 청년 담론의 상당수가 이들이 처한 객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은 청년 당사자 연구자들과 청년 당사자 운동에서 비판되었다(김선기, 2016, 2018; 정상진, 2018).³⁾ 세대 담론 자체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세대 균열들을 은폐할 수 있으며, 세대 · 계급 · 권력 · 젠더 불평등이 교차하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이철승, 2019; 정성조, 2019; 신진욱 · 조은혜, 2020). 청년 세대라는 기표 아래 비교적 동질적이지만 제한된 얼굴들이 과대 대표되어 이질적인 개인들의 면면을 가린다. 청년 담론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중산층 가정의 남성”(김선기, 2018: 199)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젠더와 계급관계를 감추거나 재생산한다(배은경, 2015; 정수남 · 김정환, 2017). 따라서 청년 담론 속에서 여성, 고졸, 지방대 재학생, 불안정 노동에 속한 계급의 면면을 표상하지 못하며 단일한 정체성을 재생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내부의 이질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위

개념의 구체적인 개념적 분화와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정희 · 안효상(2021) 참조.

3) 정상진(2018)은 이를 ‘세대게임’으로 명명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서 사회문제나 원인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적 수사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작 ‘청년’은 기성세대에 의해 타자화되고 다수의 청년들은 주변적 존재로 남겨진다(김선기, 2018).

치성이 상호교차하여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범주를 세분화하였다⁴⁾. 대분류 기준으로 학력을 포함한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정책 경험, 고용 형태를 선정하였고, 개인의 삶의 서사가 잘 드러나야 하는 경우는 개별인터뷰로, 집단의 역동이 발현될 수 있는 경우는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로 설정하였다. 각 범주별로 여성과 남성을 각각 1명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개인 특성으로는 청년 담론에서 주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상위권대학과 하위권대학의 범주를 선정하였으나, 구체적인 학력이 연구참여자에 대한 조사 변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통해 전공(법학, 의학, 약학)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으로서 장애인, 가구 특성으로서 청년 세대에서 많이 나타나는 1인 가구를 포함하였다. 2015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1인 가구는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특히 청년층(20세~25세)에서 1인 가구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박미선·우지윤, 2021: 8-9). 정책 경험으로서 청년기본소득의 경험이 다른 정책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직활동지원금과 공공부조 수급 경험을 범주에 포함하였다. 청년의 노동과 삶의 영역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청년노동인 알바 노동과 플랫폼 노동을 포함하였고,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 활동가, 이민 준비자, 청년 예술가, 니트(NEET)도 조사대상 범주에 포함하였다⁵⁾.

청년세대의 노동 및 직업과 관련하여 최근 청년 세대 내에서 직업과 관련된 열풍을 반영하기 위한 범주로서 (1) 공무원 및 공사 시험준비자, (2) 스타트업 창업 준비 또는 종사자, (3) 졸업 이후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된 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 범주의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집단이 비교적 균일하고, 개인적인 내밀한 삶의 서사보다는 직업 경험과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집단의 역동성이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FGI로 구성하였다. 공무원 및 공사 시험 준비 그룹은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시족인 나라”로 명명되는 공무원 시험 열풍은 상시 구조조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임홍택, 2018)을 한 집단으로,⁶⁾ 스타트업 창업 준비 또는 종사자 그룹은 정부의 청년고용 대책이 직접

4) 다양한 범주로 구분한 특성에 따라 실제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세부 범주를 설정한 것은 보다 청년 내의 이질적인 다양한 축들을 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5) 정규직 고용관계 내에 있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념적인 청년성뿐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면면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활동가,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 청년예술가, 그리고 고용되지 않았으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니트(NEET) 청년을 포함하였다. 주류 청년 담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주요한 청년 활동 범주로 제시한 연구는 류연미(2014), 조문영·장봄(2016), 조문영 외(2017), 김규혜 외(202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52.3%가 비경활인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선화하면서 ‘혁신적인 창업가’이자 ‘투자받을 대상’으로 호명된 청년이 자본가이자 노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집단으로(조문영, 2018), 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집단은 졸업 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된 진로를 선택한 집단으로 선택하였다.⁷⁾

〈표 1〉 연구참여자 범주

구분	남	여	계	비고	
개인특성	상위권대학	1	2	3	
	하위권대학	1	1	2	
	장애인	0	1	1	지체 장애로 한정
가구특성	1인 가구	0	1	1	-
	기혼	0	1	1	-
정책경험	구직활동지원금	1	2	3	해당 정책 수급경험이 있는 자
	공공부조	0	2	2	
개별 인터뷰	알바노동자	1	3	4	임금노동자(비정규직) + 주당 노동시간 20시간 이하
	플랫폼노동자	1	0	1	앱을 통해 일을 받는 노동자
청년 노동 및 삶	비영리단체 활동가	1	0	1	-
	이민준비자	1	1	2	장기적으로 이민계획이 있는 자
	청년예술가	1	1	2	문단 등단준비생
	니트(NEET) 청년	1	1	2	비경활 + 주당구직 및 직업훈련시간(0시간) + 비교육 및 미취업기간(1년 이상 응답자)
계	8	17	25		
FGI	공무원 및 공사 시험준비자	3	3	6	-
	스타트업 창업준비 또는 종사자	4	2	6	-
	약학대학생	3	2	5	-
계	10	7	17		
총계	18	24	42		

이며, 이 중 13.1%인 62.2만 명이 ‘취업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중 1/3은 일반직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7) 다만 리쿠르트 과정에서 의과대학 재학 중 청년은 인터뷰 참여를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로스쿨의 경우 1명의 참여자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인터뷰 당일날 참석을 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여 실제 인터뷰는 약학 대학 재학생 범주로 변경되었다.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정책 경험, 청년 노동 및 삶의 변수 범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개별 인터뷰로, 노동 및 직업 범주의 연구참여자는 FGI로 구성하여 개별인터뷰 연구 참여자는 25명, FGI 연구참여자는 17명으로 총 42명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였다. 인터뷰는 총 28회 수행되었다.

2) 조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들을 다양한 범주로 구성하고, 연구참여자 모집 및 선정에 있어서도 눈덩이표집 방식이 아니라 리서치업체를 통해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수행을 위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질적 연구자 5명이 다양한 전공으로 모였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질적 연구 방식을 논의하고, 대상 범주를 토론하고 합의하고, 총 28회의 인터뷰를 나누어 맡아 함께 또는 단독으로 진행하고, 인터뷰 수행 시마다 각 인터뷰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과 맥락, 인터뷰 분위기 등에 대한 인터뷰어의 노트를 작성하고 공유하였다. 이후 3차례의 마라톤 분석회의를 진행하여 연구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합의를 토론하고 논쟁하였다. 연구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2020년 5월~6월 연구진은 3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 목적, 연구 참여자의 세부 범주, 인터뷰 문항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참여자 범주를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8월 중순부터 10월 초순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개별인터뷰 25회와 FGI 3회, 총 28회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와 동시에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뷰 녹취 스크립트 작업을 수행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4~8시간에 걸친 분석회의를 3차례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개별인터뷰와 FGI로 구성된다. 범주별 연구참여자 리쿠르팅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후 참여를 승낙한 사람에게 연구진이 연락하여 일정을 확정하였다. 개별인터뷰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편의를 반영하여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근처의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1회 약 2~3시간에 걸쳐 수행되었다. FGI는 8월 25일과 9월 10일 2일 간 FGI를 위한 장비가 구비된 리서치업체의 회의실에서 수행되었다. 한 차례 당 2시간~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모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수행되었는데, 설문문의 내용의 대범주는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수령 경험, (2) 자신의 삶과 가족/사회/세계를 서사화하기, (3) 기본소득에 대한 관점과 견해, (4) 미래에 기본소득의 정기성과 충분성이 보장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자신의 의견과 견해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1) 청년기본소득 수령 경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과 소비,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에 대한 생각, 다른 유사 정책들(구직활동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공공부조 등)과의 비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청년 자신의 삶에 대한 논의는 일과 학업, 가족 구성뿐 아니라, 최근에 관심 있는 사회적 문제나 이슈, 자신의 삶에서 만족스러운 부분과 그

렇지 않은 부분, 한국 사회에서의 만족스러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현재의 변화를 위한 조건들을 논의하였다. (3) 기본소득 전반에 대한 관점과 견해는 기본소득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의견과 청년기본소득 수령 경험 이후 생각이 바뀌었는지, 기본소득의 찬반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4)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충분성이 보장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자신의 삶과 사회/세계에 대한 기대와 변화는 어떠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Ⅲ.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성과 가치들을 경험하게 하는가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하여 각 속성별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 무조건성에 대한 낯선 경험

1) 무슨 일로? 왜 주지?

연구참여자들은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은 느낌에 대하여 ‘개이득’, ‘개꿀’과 같은 그들의 용어로 조건 없이 주는 현금지원에 대해 반가움을 표현했다. 동시에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반가움과 동시에 ‘무슨 일로? 왜 주지?’라는 의아함과 의심도 들었음을 고백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이만 충족하면 준다는 것에 대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닌지 혹은 내야 할 서류들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이상한 정책은 아닌지 의심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자신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자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무조건적 급여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급여 방식이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그 액면과 이면을 의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몇몇 연구참여자와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다.⁸⁾ 성남시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은 주변의 오빠나 언니/형이나 누나가 받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미 경험한 일에 해당했다. 성남시 거

주 연구참여자는 소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은 낮은 경험이었다. “파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 주는 거고, 젊은 사람한테 주고, 진짜 알바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는 거잖아요. 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연구 참여자 16)라는 말은 이 낮은 경험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 도대체 얼마나 낮아야 주는 거야?

청년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반응은 다른 청년 정책들의 조건성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청년들이 신청해서 수급할 수 있는 현재의 청년 정책은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국가장학금, 청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청년 공공임대주택, 창업지원 정책 등이 있다.⁹⁾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여 살펴보고 지원하여 수급했거나 탈락한 경험을 언급한 청년 정책은 국가장학금,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순이었다¹⁰⁾. 연구참여자들은 소득분위가 높아 국가장학금이나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국가장학금이나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떨어지기도 했고, 받기도 했다. 이들 중 특히 신청조차 하지 못했거나,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지지가 두드러졌다. “드디어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연구참여자 1), “항상 소득 분위 기준 때문에 못 받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연구참여자 5)라고 응답하며, 부모의 소득 분위로 자신을 모든 정책에서 배제시킨 조건성에 대한 실망과 청년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 주는 만족을 비교하였

8)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본소득의 지지도가 높다는 결과가 존재하며(진형익·이미숙, 2020), 2019년~2020년 실시한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 조사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친 도민들의 경우 숙의과정 참여 전에 비해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였다.

9) 청년지원정책을 목록화하여 알려주는 사이트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지원정책이 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pWise=main&pWiseMain=H3>(최종 접속일 2020.11.01.)

10) 국가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상자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소득 수준별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2020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여 3구간까지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연간 520만 원부터, 8구간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는 67만 5천 원까지 차등하여 지급된다. 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라는 소득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졸업 증명서 또는 재적 증명서, 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자격 요건 증명을 위한 서류 이외에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재단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들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연구참여자 1, 5, 6, 20).

“취업 성공 패키지를 대학교 졸업할 때쯤 신청했는데 떨어졌거든요. 그거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신청 받은 거 같은데 어쨌든 그게 먼저였어요. 기본소득 준다고 하니까 ‘이제 좀 다 같이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청년기본소득 준다고 했을 때 드디어 나도 받을 수가 있구나.” (연구참여자 1)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했다 떨어지고, 졸업하고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했다 떨어졌다는 연구참여자 1은 이렇게 말한다. “그게 건보료(건강보험료) 기준 같은데 저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낮아야 하는 거야? 그 생각 했었어요.”

가구소득 기준으로 현재의 여러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중산층에 속한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은 보다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무조건성은 중산층에 속한 청년 개인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박탈감’과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이 정책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무조건성’으로 꼽았다. 그 이유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장학금과 같은 지원혜택이 있어서 기회가 있고, 잘 사는 친구들은 평소 여유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자신과 같이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박탈감을 느껴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박탈감은 소외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가장학금과 청년기본소득을 비교해서 언급한 연구참여자 23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따라 자신은 경제적인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선별적인 청년정책(국가장학금)로 인해 소외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립하려면 사회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니 자립조차 꿈꿀 수 없는, 자립의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은 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준다는 점이 좋았고, 그로 인해 “내가 뭔가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청년 정책이라고 비교하였다.

“저는 불만이 좀 많았는데, 이번 청년기본소득 말고 다른 거예요. 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다른 정책들은 그런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느낌이 좀 강해서. (중략) 나도 이 (사회) 안에서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나 혼자, 그냥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중략) 저랑 그 친구랑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저도 부모님한테 돈 안 받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제 친구는 정부에서 돈을 받고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게 저한테는 소외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중략) 만약에 이 청년기본소득도 집안 소득에 따라서 주었다면 저는 기분이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3)

3) 글짓기의 괴로움

최근 다양한 정책들은 모두 응모를 하고, 경쟁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시스템을 거친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람을 선발하는 경쟁 시스템은 선발된 사람에게는 성취감을 줄 수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패배의 경험을 안긴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조차 지속적인 경쟁 시스템을 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경쟁, 또 경쟁을 겪은 청년 세대에게 모든 지원은 공모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는 삶의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패배를 경험해야만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경쟁을 해내야 하는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경쟁을 향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가능성을 계발하려는 집요한 노력 등으로 특징 지어진 ‘생존주의 세대’로서 독특한 마음의 역동을 갖게 된다(김홍중, 2015: 186).

구직활동지원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들에서 자산조사 이외에 공통적으로 전제된 또 다른 조건성은 활동계획서 작성과 심사, 면접 등이다. 평소 급여 수급을 위한 노동¹¹⁾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인 연구참여자 12는 구직활동지원금의 경험을 글짓기를 해야 하는 불편함, 정장을 빌리거나 구입해서 00대학교까지 가서 면접을 봐야 했던 번거로움, 구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곳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의 불편함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 12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떨어지는 경험을 “정장까지 입고가서 했는데 못 받아요, 한스럽잖아요”라고 표현한다. 특히 연구참여자 12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위한 서류 작업 등을 ‘글짓기’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끼워 맞추는 글짓기에 대한 피곤함을 호소하였다. 실제로 인터넷에 ‘구직활동지원금’을 검색하면, 구직활동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선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무수히 많은 블로그와 정보글들로 가득하다. 연령, 소득 조건, 학업 조건, 미취업 요건 등을 충족시키더라도 다음 단계인 ‘선정’이라는 관문을 뚫기 위한 구직활동계획서 경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청년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해 매우 편안한 감정을 표현했다. 청년들의 조건성에 대한 경험과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인식은 무조건적 청년기본소득을 “형평성이 충족되는 정책”(연구참여자 5)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

11) 인류학에서는 이를 ‘분배노동’이라 칭하기도 한다. 국가로부터의 공적이전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적이전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노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분배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퍼거슨(2017: 183)은 타인의 소득에 대해 분배를 요구하고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배노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그러나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분배노동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적절치 않아 보인다. 분배를 위한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조건부 급여에서의 노동과 사적이전을 받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수많은 활동들이 모두 분배노동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고, 필수불가결한 절차가 모두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분배노동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 조건적 정책 지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성에 대한 반가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른 조건이 전혀 없잖아요. 나이만 보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내가 여기에 해당 하나 안 하나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이 나이만 되면 되니까.” (연구참여자 3)

4) 이재용 손자한테 쥐도 상관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청년 정책들(국가장학금,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소득 조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만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를 압도적으로 잘 사는 계층, ‘어정쩡한’ 중위 계층(본인 포함), 명백하게 가난한 계층으로 삼분화하여 표현한 연구참여자 5의 경우 어정쩡한 중위 계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연대가 아니라 선을 긋게 되는 이유로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혜택과 저소득층 특별전형 등의 제도적 혜택에서 중위 계층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면서 불만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가구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데 각종 수혜를 못 받았다면, “줄 거면 다 줘야지”로 결론내리고, 저소득층 대상 선별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러니 중위 계층이 ‘애국심’이 생기기 힘들다”(연구참여자 5)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반면, “공짜로 주는 돈, 청년기본소득이면 청년에게, 노인기본소득이면 노인에게 공짜로 주는 돈”(연구참여자 15)으로 표현되는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조건 없이 평등하게 주는 소득”(연구참여자 40, 42),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노동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금”(연구참여자 4)이었다. 무조건성은 자산조사를 전제한 많은 제도들과 달리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이라는 측면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재용 손자한테 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세금을 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아무한테도 못 줘요.” (연구참여자 12)

“오히려 다 줘야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소득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에 불만을 덜 가지는 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반감을 줄여야지, 그래서 다 주는 게 괜찮은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4)

무조건적 청년기본소득의 경험은 “나이만으로 ‘프리패스’가 되니까 신기하고 낯설었”고, “북유럽에서 복지를 받는 느낌”을 주면서 “다른 청년정책(취성패)은 조건이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서 이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삶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되”는(연구참여자 20) 정책이었다.

2. 개별성에 대한 경험

1) 진짜 내 돈과 내 돈이 아닌 것

2019년 4월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된 이후 채 일 년이 안 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의 여파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시작되고,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단위로 지급되었다. 한국 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충족시킨 현금 급여였다.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구 단위로 차등 지급되었는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이 시기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여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내 시·군·구에 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의 현금 급여(지역화폐 방식)를 모두 개인 단위로 지급하였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청년기본소득 지급부터 본 연구의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까지 1년 반 사이에 순차적으로 청년기본소득(개인 단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개인 단위),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개인 단위),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가구 단위)을 지급받았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경험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자체를 전혀 모르거나,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 단위 지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거나, 가구 단위 급여와 개인 단위 급여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 및 경기도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가의 가구 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게 있었나요?”(연구참여자 9)라고 반문하거나, 정부가 지급한 것은 알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지급된 돈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되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 건 내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사용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로 나와서 엄마가 알아서 사용했어요. (중략) 나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요.”(연구참여자 14)라고 언급하면서, “가구로 받는 건 내 몫이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가구 단위 급여와 개인 단위 급여의 차이를 “진짜 내 돈과 진짜 내 돈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내 돈이 아닌 돈”이고,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은 내 통장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 얼마가 남았는지, 어디에 썼는

지 다 알 수 있고, 이걸 온전히 내 돈”(연구참여자 7)이라고 설명한다. 신청과 수급 그리고 관리 전반에서 청년기본소득은 ‘내 것’이라는 감각이 충만했다.

개인 단위 지급과 가구 단위 지급을 같은 시기에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내 돈과 내 돈이 아닌 것의 구분 기준으로 자기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제시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가구로 나와서 부모님이 쓰셨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내가 돈이 없을 때 나한테 나와서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데 써서 아주 도움이 되었”다거나(연구참여자 15), “청년기본소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죠.”(연구참여자 22)라는 진술은 개인 단위 급여가 자기 소유로 인식됨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청년기본소득 화폐를 엄마가 쓸 때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나한테 꼭 쓴다고 알려달라 했어요. 이걸 ‘내가’ 받은 것이니까”(연구참여자 22)라고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기 소유로서의 ‘내 돈’은 굳이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으면 수령 여부조차 모를 정도로 개인이 훨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연구참여자 12).

2) 내 몫을 달라. 헛소리 하지 마라.

“정부 재난지원금은 처음부터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한꺼번에 관리하고 사용하셨구요.”라는 연구참여자 22의 말처럼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중앙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기 몫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몇 연구참여자는 가구주에게 지급되었지만,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으므로 자기 몫이 있다고 인식했다. 기본소득에 대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연구참여자 12는 부모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중 자기 몫을 요구했다가 도리어 욕만 얻어먹은 사연을 설명했다. 그는 부모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의 자신의 몫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부모로부터 “헛소리 하지 마라”는 말만 들었다면서 자기 몫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인 청년 세대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자기 몫이 존재한다는 바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이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란 어려워 보인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용돈까지 받아쓰니까 모든 걸 다 부모님한테 의존하니까 당연히 제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연구참여자 4) 한계가 있고, 부모 역시 가구로 지급된 급여를 개인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세대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세대원에게 민주적으로 분배되거나, 청년 개인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란 묘연해 보인다.

개인 단위 급여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사용권에 대한 의식이 분명한 반면, 가구 단위의 급여의 경우 가구 내에서 소비 결정 및 배분의 민주성은 발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서정희 · 노호창, 2020; Lenczewska and Schwartz, 2020)은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3. 정기성에 대한 경험: 한시성과 계획성

기본소득의 정의 요건으로서의 정기성은 급여의 간격, 빈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에서 생계를 꾸리고 유지하는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스탠딩, 2018). 이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된다는 속성과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두 가지 하위 속성을 내포한다(서정희·노호창, 2020: 44). 그러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4차례만 지급되는 급여로서 정기성의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된다는 속성은 충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은 충족하지 못한다. 한시적인 지급은 소비의 계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청년기본소득을 계획을 세워서 사용한 경우가 드물었다. 연구 참여자 26은 청년기본소득을 계획을 세워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급여의 한시성을 언급하는데, 한시적인 지급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저는 계획을 세워서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란 말이 기본소득이긴 한데, 1년 밖에 못 받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소득이긴 한데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이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럴 필요성이 거의 없었죠.”(연구참여자 26)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시적인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면, 그 금액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월 30만원 되어도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3개월에 한 번, 1년이면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고정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내 수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획에 넣을 거 같아요. (중략) 그걸로 일단 식비 정도 충당할 수 있으니까, 식비 정도 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연구참여자 15)

4. 현금성에 대한 경험: 지역화폐를 경유한 지역의 재발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었다. 이 방식이 현금성 원칙을 훼손하고, 그 수준도 낮은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닌 가짜 기본소득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지역화폐로 지급된 급여가 소득의 전부가 아닌 경우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소비 용처는 지역화폐로 지불하고,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는 소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소비를 결제 수단으로 구획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급여 역시 현금 급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린다는 점은 연구참여자 7이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원래 나갈 돈 중에 일부를 이 돈으로 사용하고, 이 돈 사용해서 아낀 돈으로 다른 걸 하면 되니까요.” (연구참여자 7)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지역화폐라는 지급 수단은 정책의 역동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지

역화폐 지급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 중 하나는 ‘지역의 재발견’이라 명명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의 증대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은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기회를 생성했다. 지역화폐가 시·군 내 사용처를 제한했기 때문에 생활권과 거주권이 다른 참여자들 경우에는 사용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다수의 참여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지급은 급여 수급자로 하여금 “이게 있어서 많이 안 가봤을 법한 데도 가게 되”고(연구참여자 5), “받고 나서 여기저기 뭐가 되는지 찾아보면서 가게가 뭐가 있는지도 많이 알아보게” 만드는 역동을 발휘했다. 당시 이민을 준비 중이었던 연구참여자 20의 경우, 지역화폐를 쓰기 위해 평소 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지역 내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걸 쓰려면 지역에 있는 데서 써야 되잖아요. 새로운 식당이 어디 생겼냐, 친구랑 원래 주변에서 먹거나 지역에서 먹을 일이 잘 없었는데 지역에서 새로운 식당이 어디 생겼는지 지역 화폐를 쓰려고 찾아 본 적이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20)

지역화폐로의 지급은 단순히 새로운 급여 형태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달체계 도입이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전국단위로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발행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나 쓰임이 더욱 대중화되었다. 청년기본소득 수급은 처음으로 지역화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계기였으며, 사용 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낯설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역화폐 도입의 논리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처음에 지역 화폐가 생소하니까 포인트야 뭐야 돈으로 보이지 않고 교통 카드 수준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낯설고 왜 이렇게 주는 거지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 화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저도 어느 정도 이게 뭔지 알아야 쓴다고 생각하니까 설명서 다 읽어보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정책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가 납득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좋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1)

5. 충분성(결여)에 대한 경험: 낮은 수준의 급여수준과 ‘기본’소득 간의 간극

후술하겠지만, 낮은 수준의 청년기본소득 급여는 청년 세대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어 유의미하고 여유를 가능하게 했다는 답변이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수준의 청년기본소득 급여는 몇 가지 오해와 불만족을 낳았다. 제도 시행 초기 청년기본소득과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본소득과 기초생활보장을 혼동한 경우 “처음에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돈 없는 애들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진짜 나빴거든요.”(연구참여자 28), “못사는 애들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기본’이라는 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32)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면서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내가 신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연구참여자 30)하거나, 기본소득에 대해 받는 첫인상으로 “‘기본’이란 말 때문에 저소득층을 생각”(연구참여자 15, 16, 23)해서, “처음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보고 신청할 생각을 못한 것도 저소득층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아버지 소득도 알고 있으니까 재산이랑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연구참여자 16)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러한 오해는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을 공공부조의 ‘기초’와 동일시하면서 생긴 문제였는데, 이 오해 자체는 청년기본소득이 홍보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신청해서 받는 또래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해소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기본과 기초라는 단어가 포함된 비슷하게 보이는 제도의 혼동이나 연상 그 자체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제도의 연원과 목적과 구체적인 제도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이 기본소득의 ‘기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본이든 기초이든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연구참여자들이 기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기본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년기본소득의 ‘기본’의 의미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최소한의 생계”(연구참여자 1, 8, 12, 13, 23, 27), “최소한의 돈”(연구참여자 9)으로 호명했다.

문제는 연구참여자들이 기본소득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로 인식함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대상으로 명시된 ‘청년’이 제도의 수식어로서 제도명 제일 앞에 붙음으로써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분기별 25만 원, 일 년에 100만 원이 청년의 기본인가로 반발하였다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특히 청년 세대를 불확실성과 불안정에 노출된 세대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 중에서는 충분성이 결여된 청년기본소득 정책에서 기성 세대의 혹은 이 사회의 청년에 대한 인식 수준의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기본이라는 말은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수준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참여자 31은 청년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지만, 청년기본소득의 연간 100만 원이 이 사회에서 청년을 대하는 수준으로 인식되고 “이 정도 받을만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연구참여자 29의 경우 청년을 “기만하는 느낌”까지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기본이라는 말은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수준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서 생각하는 청년이 받았을 때 청년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재정 상 지금 모자라서 이만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소득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은 이 정도는 적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그러면 나는 분기별로 25만 원 받았을 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구요.” (연구참여자 31)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일단 처음 들어보면, 기본적인 소득을 정해주는 느낌이에요. (중략)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약간 기만하는 느낌, 분기당 25만 원이 대체 누구의 기본소득이냐는 느낌, 차라리 ‘지원소득’으로 순화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9)

급여의 불충분성은 소비에 대한 제한으로 연결되었다. 청년기본소득을 그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정도는 아닌 “보너스”로 규정한 연구참여자 4는 분기별 25만원이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위해 쓰기에는 애매”했고, 시장이나 음식점, 부모님 등에게 “호지부지” 쓰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헤프게 지출된다”(연구참여자 4)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을 월 최저생활비라 생각한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의 “금액의 수준이 월 생활비로는 부족해서 의아”(연구참여자 27)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IV. 청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청년’ 세대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일차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주어진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화로 이어진다. 이는 범주로서의 청년에게 국한된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자, 청년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해석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에서 출발한다.

1.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의 삶

연구참여자들은 왜 청년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갈래의 반응으로 응수했다. 청년 세대론과 연결되는 응답이기도 했던 이 답변들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 세대의 삶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러한 청년 세대에 대한 (지방) 정

부의 태도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들이 묘사한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의 삶은 연구참여자 2의 표현처럼 “행복하다와 불쌍하다는 중간에 놓인” 양가적 위치인 듯 했다. 한 편에서는 청년이란 “뭔가를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때”(연구참여자 16, 30), “지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나이”(연구참여자 14, 19), “젊고 활발한 때”(연구참여자 4, 26, 32, 37), “불행하지 않은”(연구참여자 32, 35, 37) 사람들로 묘사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창업과 스타트업 관련 직군의 참여자, 공무원 준비생, 약학대학생, 자신의 소득 수준을 중산층으로 표현한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자신과 청년세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에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청년 세대를 “버려진 세대”(연구참여자 1), “비운의 세대”(연구참여자 21), “지쳐있고 불쌍함”(연구참여자 15, 17), “사회적 약자이면서 책임감이 커지는 시기”(연구참여자 18, 28, 42), “힘들고 불안한”(연구참여자 26, 29, 33, 35) 계층으로 인식했다. ‘버려진 세대’라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본인의 나이는 ‘무조건 대학을 가야하고,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청년 정책이 두드러지는 것도 없는’ 세대로 표현했다. 연구참여자 21은 90년대생을 불행한 세대로 표현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공무원 준비 중인 연구참여자 17의 경우 청년을 ‘지쳐있는’ 세대로 표현했다.

취업준비생이면서 알바노동자인 연구참여자 15는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1년을 휴학할 정도의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럼에도 그/그녀는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못 하고, 공부만 하고, 일터로 내쫓긴다는 느낌이 드는” “너무 불쌍한 세대”로 표현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청년은 많은데, 이에 비해 사회가 준비가 안 되었다”며 취업난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부라는 학업성취 이후 쉽 없이 취업준비와 직업성취라는 과업으로 내달려야 하는 한국 청년들의 단상을 매우 안쓰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청년들이 ‘힘들다’라고 표현한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취업난’과 ‘소득 없음’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창업/스타트업 직군에 있는 연구참여자 33, 35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과연 독립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학대학생 연구참여자 38은 청년 세대는 양극단만 존재하고 중간은 없다고 논평했다. “한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불복 같아요. 정말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부모님이 학비 대주시고, 졸업하고 당장 취업 못 해도 생활비 받고 구직활동하고, 좋은 회사가거나 물려받거나, 아니면 정말 잘 안 풀리거나 계속 안 풀리는. 중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복불복 중 그나마 복에 속한다고 평가했는데 자신이 약학대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자신이 노력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의 부와 가난의 대물림, 계층의 서열화, 과열된 경쟁과

쉽 없음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2.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독해

1) 드디어 나라가 변하는구나: 청년에 대한 국가의 위로와 격려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에 대한 인식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미래지향적 존재이자 불쌍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시혜의 내러티브가 녹아있다. 청년기본소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응답은 “용돈, 격려, 위로”, “보너스”였다. 연구참여자 2는 이 정책을 ‘격려’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딱 25세이니까, 저는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뭔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주는 용돈 같은 느낌”으로 인식했다. 연구참여자 17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조금 위로, 맛있는 거 먹어라”라는 느낌으로 설명했다. 연구참여자 4는 ‘이 돈이 없어도 못 사는 게 아니니까 보너스’의 느낌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연구참여자 16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온 거니까 단지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청년기본소득을 아직 안정적인 수준에서의 소득 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세대에게 주는 정부의 지원과 격려로 표현했다. “나라에서 힘내라고 주는 용돈”(연구참여자 2), “정부가 주는 용돈”(연구참여자 7),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소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정책”(연구참여자 13), “청년에 대한 위로, 맛있는 거 먹어라.”(연구참여자 17), “경기도가 청년 복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연구참여자 12), “불확실성이 있는 나이에서 그래도 이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써 봐라”(연구참여자 42)라는 언술로 나타났다.

청년 중에서도 왜 24세 청년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년 중에서도 24세의 청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받은 게 없는 세대”(연구참여자 31)인데, 그 근거는 “왜 기준이 24세인지가 궁금했었는데, 받을만하다 싶었던 게, 중·고등학교 때 무상급식도 아니었고, 분기별 학교 운영 지원비라 해서 내는 돈도 많았고, 요새 애들은 급식비도 안 내고 하니까 우리가 받을 만하다”(연구참여자 31)는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완전 좋죠. 마다할 사람이 없”는(연구참여자 26) 급여로서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통해 그동안의 국가가 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았다는 불만과 동시에 이제야 국가가 청년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평가를 동시에 드러냈다. 무엇보다 90년대 생을 비운의 세대로 표현했던 연구참여자 21은 “오죽하면 이런 걸 하겠냐”라고 하면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좋기는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청년의 비관적 상황을 도리어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이제야 제대로 청

년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드디어 나라가 변하는구나. (중략) 청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는구나. 원래는 노인들한테 집중되어있던 자원을 드디어 청년들에게 배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31)

2) 자기 충전용 플러그

생존과 도태, 승자와 패자, 끊임없는 자기개발 속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은 청년기본소득 수령 경험을 회고하며 ‘여유’와 ‘안정감’의 단어들을 떠올렸다. 이러한 인식은 과연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삶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가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생존주의 세대’에서 ‘생존’이라는 실존적 필요는 압축적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의 근대성에 배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청년 세대의 문제만은 아니다(김홍중,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청년들은 생존이라는 문제를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는 듯 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이에 따른 모욕을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여길 때, 이들은 더욱 개인의 능력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실패를 통한 자존감의 상실, 나아가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장은주, 2016). 경쟁에 몰두할수록 불평등을 용인하고 모욕을 개인적으로 감수하며 기존의 헤게모니를 반복하게 되는 자기배반¹²⁾의 인정질서 속에서 기본소득은 모종의 안정과 여유라는 감각을 낳았다. 잠시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여유를 제공한 것이다.

“부모님이 금수저인 친구들은 다르겠지만 청년은 대부분 자기를 한번 보듬어야 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그래서 나라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그렇게 한 번에 주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해서, 자기를 위해서 조금 위로하는, 맛있는 거 먹어라.” (연구참여자 17)

여유의 종류는 (소비)선택의 여유, 행복감, 마음의 여유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사람의 여유는 돈에서 나온다”고 말한 연구참여자 3의 말은 다수의 참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연구참여자 5는 “약간 소박하게 여유를 느끼는 게 행복감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배달 플랫폼 아르바이트 종사자인 연구참여자 18의 경우에 당시 일을 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덜 피곤한, 내 삶이 여유로워 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시인등단

12) 이러한 모순은 김홍중(2015)의 연구에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스펙 경쟁에서 개인은 자기 통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자본뿐만 아니라 감정, 집중력, 상상력 등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능력들을 활용하여 생존에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김홍중, 2015: 196-197).

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연구참여자 23에게도 청년기본소득은 ‘심적 여유’를 주는 정책이었다.

“저는 정말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누려보지 못할 그런 것들이 심적 여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뭔가에 제한에 걸리지 않았던 것.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물론 25만 원이 누구는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어요.” (연구참여자 23)

이러한 여유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짙었던 일상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동안에 ‘안정감’(연구참여자 9)을 느끼게 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느낌”(연구참여자 8)을 받게 했다. 이 든든함은 “튼튼한 버팀목” 같은 느낌이자, “어떤 욕구가 생겼을 때 지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연구참여자 8)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청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연구참여자 9)기도 했다. “자신감”을 주는 제도이자, “사기 충전용 플러그”(연구참여자 17)였고, “근심 하나를 덜어주는”(연구참여자 23) 제도이자 소고기와 같은 여유 있는 소비(연구참여자 30)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였다. 기본소득은 물질적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줌으로써 혹은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Standing, 2020).

V.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가능성

청년기본소득이 범주형 기본소득을 넘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두 번의 시험대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사회가 지금보다 더 바람직하고,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범주형 기본소득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는 그리고 내 삶은 어떠할까?

다수의 참여자들이 충분하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사회상과 그 속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즉각적으로 서술하지는 못했다. “불가능한 걸 상상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라는 연구참여자 34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다수의 참여자들이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충분성이 모두 충족된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상상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평소에 ‘사회학적 상상력’¹³⁾을 발동해보지 않은 참여자들의 경우 상상의 지평은 훨씬 더 좁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지급된 삶과 세계에 대한 지평 속에는 몇 가지 상들이 존재했다.

1) 숨통이 트이는 삶

참여자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보편적 기본소득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묘사한 그림들은 청년기본소득 경험의 확장이었다. 9급 공무원 준비 중인 연구참여자 27은 “단순히 더 행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플랫폼 노동자인 연구참여자 18은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에 대해 “상상만 해도 설레”한다고 표현하며, “일을 많이 줄이고 좀 더 숨통 트이는 삶”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취업준비생인 연구참여자 8의 경우 “별 좋은데 앉아서 카페 이런데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브런치를 먹거나 쇼핑을 간다든가 여유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양광이 비치고 느긋하게 앉아서 핸드폰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현재 직장인인 연구참여자 12는 “경제 좋은 데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프리터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며 “제주도 가면 오늘은 날이 좋아서 쉽니다.”라는 삶의 방식이 평소 부러웠다고 회고했다. ‘날이 좋아서 쉽니다’라는 말 속에는 전반적인 삶의 가치관 변화를 응축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할 때 쉴 수 있는 경제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날이 좋아서’와 같은 주관적 삶의 기준에 근거해서 삶의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복과 여유, 숨통이 트이는 삶에 대한 묘사는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시인등단을 준비 중인 연구참여자 23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느라 시를 쓰지 못하는 현재의 불안한 삶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루프스 병을 앓고 있는 연구참여자 24는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삶을 포기해야 될” 걱정은 확실히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는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을 낮추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본소득의 예상 효과를 보여준다.¹⁴⁾

13) 사회학적 상상력은 Mills(2000)가 제안한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역사와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라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청년층의 주된 생존방식을 생존주의라고 명명할 때 생존주의는 “사회적인 것의 불가능이 생산하는 마음의 형식”(김홍중, 2015: 206)으로서 사회학적 상상력의 결여를 의미한다.

14) 현대사회의 불안정성(insecurity)은 예측 가능한 위험(risk)이 아니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소득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성에 대해 대응하고 개인과 가구, 지역사회와 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Standing,

2)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다 여유로운 삶에 대한 상상은 다양한 활동과 관계의 변화로 나아가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1은 평소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는 게 여유로워지면 결혼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여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연구참여자 32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간에 쫓겨서 관심 갖지 못했던 기아 문제나 환경 문제에도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소비의 측면에서도, 기본소득을 통해 평소 비용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친환경 브랜드나 비건 식단을 지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구참여자 12).

‘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것(연구참여자 4), “이 일보다 좀 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고,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분이 될 것”(연구참여자 35)같다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평소에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활동하는 것에 시간을 더 쓰고 싶다”(연구참여자 18)는 바람을 표현하기도 했다.

여러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가 늘어난 영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관계에 대한 상상들을 꺼내놓았다. 이 속에는 여유와 안정감에서 비롯한 관계의 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 물질적 필요에 충실한 활동 이외에 ‘의미 있는 일과 활동’에 대한 가능성들이 묻어있었다.

3) 메마른 현실을 넘어

행복의 영역이 개인의 차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사회·세계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소 제한적이었다.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대되는 사회상이 제시되었는데, 공시생인 연구참여자 26은 현재의 한국 사회는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면 재기가 어려운 사회라며,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포기할 것이 줄어든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플렉스 문화¹⁶⁾’가 다소 희석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다(연구참여

2020: 22-23).

15) 실바(2020)는 미국 노동계급 청년들을 인터뷰하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자아변형의 서사로 조직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무드 경제(mood economy)라고 표현하였는데, 무드 경제란 “감정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자아관리 문화”를 말한다. 청년층은 자아관리가 행복의 열쇠라고 이해하며 이를 실천한다(실바, 2020: 54).

16) 플렉스 문화란 과시적 소비문화를 의미한다. 플렉스(flex)란 사전적 의미에서 ‘자신이 가진 것 혹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주로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는 방식으로 과시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비속어이다. 한국에서 플렉스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이후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

자 3, 4, 21). 전반적인 삶의 수준의 증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인간의 존엄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의 마련,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주기의 정상과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자신이 성취하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증가한 사회에서는 현재의 플렉스 문화와 같은 과시적 소비성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과 구별짓는 경향과 현재 자신의 심리에 충실하게 소비하는 ‘가심비’¹⁷⁾와 같은 경향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급된 사회에서는 경제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의 삶을 예측가능하게 하며, 타인과의 정체성을 구별하려는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가치를 실천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다.

“살기 힘들니까 플렉스 문화가 떠오르는 것이고, 플렉스 문화가 생기니까 문화의 생태계도 다 흐려지는 느낌인 거예요. (중략)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계속해서 살기 힘들어질수록 자극적인 거 찾게 되잖아요. 음식도 자극적으로, 방송도 자극적으로, 오죽하면 먹다 뱉어가지고 먹고 뱉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해 가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오죽하면 애들이 유튜버가 꿈이겠어요.” (연구참여자 21)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노동시간이 단축된 사회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자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 7은 “초기 1~2개월 동안은 하루에 한 시간 공원에 가서 가족이랑 산책하기. 이러면 범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소통하는 시간이 없으니 그런 시간만 주어져도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아서.”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경험하면서 목표가 달라지고 (중략) 그러면 한 곳에 포화되는 게 완화되니 경쟁 심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를 “메탈라 있다”고 표현했다. 2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관공서 업무도 평일에 널널하게, 등산을 가든 자전거를 타든 영화를 보든 주말에 몰아서 하던 것을 평일에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숨통 트이게 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말만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예측했다.

2.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을 지지하는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의 모두에게 충분한 수준으로 지급

플루언서의 과시적 소비행위가 자주 노출되고, 사람들은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 만족감 혹은 박탈감을 얻는다(이정기·황우님, 2021).

17) 가심비에서 파생된 말로서, 가격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여 소비하는 최근의 경향을 의미한다.

하는 기본소득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오히려 다 줘야지,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덜 수 있다”(연구참여자 14)거나 “선별하는데 비용이 들며 고소득층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모두에게 지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연구참여자 12)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으로 제기되는 게으름이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나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돈을 주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뭉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좋다고 하면 존중하는 거고요.”(연구참여자 10)라고 답하거나 “도덕적 해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연구참여자 12)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이 청년이라는 범주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반대도 표출되었다. 그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은 강한 노동윤리와 협소한 호혜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기본소득의 주요 반대론 중 하나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Roosma and van Oorschot, 2020)이 청년 이외의 계층에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로 드러났다. 필요한 집단을 선별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세금 낭비”이며, “세금 도둑”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이 내재해 있었다(연구참여자 5, 7, 8, 17). 동시에 유급노동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기본소득은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도 존재했다(연구참여자 3, 7, 8, 13, 20). 이 경우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자신의 일 혹은 유급노동을 지속하겠다고 다수가 응답했던 반면, 타인의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중잣대가 적용되기도 하였고,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국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연구참여자 13, 25).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은 “노동윤리를 해치지 않는 수준”(연구참여자 17, 19, 21, 28, 29, 33, 41, 42)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당근 하나 던져주는 느낌”, “그냥 길 가다가 주운 돈 느낌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연구참여자 21)이라는 참여자들의 평가는 유급노동 중심주의의 강고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VI. 결론 및 제언

새로운 제도가 등장했고, 그 제도를 처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생겼다. 본 연구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한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징과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지, 그리고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이행 경로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이더라도 수급자들에게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개별성 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급여 수급을 위해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와 다양한 서류 작업 및 ‘글짓기의 피로움’에 늘상 노출되어 있는 청년 세대의 피로함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매우 긍정적으로 경험하게 했다. 동시에 연구참여자들은 개별성이 갖는 힘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시기에 순차적으로 경험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비교해 볼 때, 범주형 기본소득이더라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특징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범주형 기본소득은 한편에서 기본소득의 경험을 통해 일부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을 지지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 그 ‘범주’에 대한 정당성을 내재화하고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한 연구참여자들이 일관되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청년은 받을만한 계층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만한 계층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라는 범주에 한정하여 지급됨으로써 수급자 청년들은 왜 청년에게 주는가를 청년 세대 담론 혹은 청년 세대인 자신의 삶의 피로함과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의 삶과 연결시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국 사회에서의 청년의 삶을 매우 경쟁적이고 피곤하고 여유가 없다고 평가한 연구참여자들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다시 말해 청년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경험했다 할지라도,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청년’이라는 서사를 경유하거나, 지역화폐 지급방식과 같은 제도의 내재적 특성에서 찾을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로 확장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와는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의 경험이 자동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어도 범주형 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난점이 있음을 드러낸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할 경우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제약성이 명확하고, 그러므로 낮은 수준의 범주형 기본소득 이외의 선택지는 거의 없다. 그러나 국가 단위의 정책으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은 증세 동맹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한 증세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정책적 선택이 가능하다.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특정 집단에 한정된 범주형 기본소득보다는 모두에게 제공되는 부분 기본소득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청년기본소득을 경험하면서 기본소득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수준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공감의 기저에 ‘청년’ 세대의 어려움으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정당화하는 경

향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범주형 기본소득이 갖는 난점으로서 ‘범주’에 해당하는 집단에게 한정하여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점에 대한 정당화가 그 집단 내에서 혹은 개인 단위에서 내면화되고 체화됨으로써 다른 집단과의 연대와 지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안효상, 2019)의 우려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연구가 범주형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을 비교해서 어느 정책이 온전한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인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범주형 기본소득이 진행되고 확대되었을 때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와 체감은 상향되나, 다른 집단과의 연대와 지지보다는 자기 집단에 대한 정당화와 내부 결속의 강화가 상향된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부분 기본소득이 낮은 수준이지만 모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의 측면에서 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급여를 올리는 것에 대해 연대를 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이 받지 않는 집단과의 연대 할 가능성보다 높을 것이다.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가능성들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서울: 사회평론.
- 김규혜·이승윤·박성준, 2020, “‘취업’과 ‘실업’의 사이에서: 청년이직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7(4), pp.49-85.
- 김선기, 2016, “‘청년세대’ 구성의 문화정치학: 2010년 이후 청년세대담론에 관한 비판적 분석”, 『언론과 사회』 24(1), pp.5-68.
- 김선기, 2018, 『청년팔이 사회』, 파주: 오월의 봄.
- 김종진·김윤영·윤자호, 2019, 「성남시 청년배당 효과분석」, 성남: 성남시.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pp.179-212.
- 라이트, 에릭 올린, 2010(2006),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브루스 액커만 앤 알스토틀 필리페 반 빠레이스 외 (편),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너른복지연구회 역, (pp.141-152), 서울: 나눔의집.
-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선·우지윤, 2021, “1인 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워킹페이퍼 WP21-01, 세종: 국토연구원.
- 스턴, 앤디·크라비츠, 리, 2019(2016),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 박영준 역, 서울: 갈마바람.
- 실바, 제니퍼 M., 2020(2013), 『커밍 업 쇼트: 불확실한 시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 이야기』, 문현아 박준규 역, 서울: 리시울.
- 배은경, 2015, “‘청년 세대’ 담론의 젠더화를 위한 시론: 남성성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8(1), pp.7-41.
- 변진경, 2018, 『청년 흡밥 보고서』, 파주: 들녘.
- 서정희·노호창, 2020, “기본소득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법학』 9(2), pp.31-86.
- 서정희·안효상, 2021, “기본소득 구성 요건의 위계화와 제도에 대한 판별: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 고찰이 실현 전략에 주는 함의”, 『비판사회정책』 (73), 페이지미정.
- 신진욱·조은혜, 2020, “세대균열의 현실, 세대담론의 재현: 세대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18(1), pp.49-99.
- 스탠딩, 가이, 2018(2017),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 안효상, 2019, “불성실한 오용과 창조적 오독: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이후”, 「계간 기본소

- 득」(3), pp.7-10.
- 안효상 · 서정희, 2020, “코로나19 이후 불확실성 시대의 새로운 소득보장”, 『산업노동연구』 26(3), pp.63-118.
- 안효상 · 이관형 · 서정희 · 박선미, 2020,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 모델 개발연구」, 수원: 경기도의회.
- 유영성 · 정원호 · 김병조 · 마주영, 2019a,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19년 1분기)」, 수원: 경기연구원.
- 유영성 · 정원호 · 김병조 · 마주영, 2019b,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2019년 3분기)」, 수원: 경기연구원.
- 유영성 · 정원호 · 이관형 · 마주영 · 김교성 · 서정희 · 이지은, 2019c,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수원: 경기연구원.
- 유영성 · 윤성진 · 정원호 · 김재신 · 마주영 · 김교성 · 백승호 · 서정희 · 조문영 · 한치록 · 김미리 · 이지은,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II):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수원: 경기연구원.
- 윤혜린 · 오민홍, 2021,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9(1), pp.31-65.
- 이선영 · 신현기 · 정종원,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도전을 자극하는가: 자연실험을 활용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54(3), pp.225-252.
- 이승윤 · 백승호 · 김미경 ·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pp.487-521.
- 이승주, 2019,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효과 분석: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5(1), pp.89-131.
- 이정기 · 황우념, 2021, “연예인 ·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플렉스(Flex) 문화가 대학생들의 과시적 소비성향,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21(1), pp.119-152.
- 이철승, 2019, “세대, 계급, 위계: 386 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한국사회학』 53(1), pp.1-48.
- 임홍택, 2018, 『90년생이 온다: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서울: 웨일북.
- 장은주, 2016, “메리토크라시와 존엄의 정치: 시민적 주체의 형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와 철학』 (32), pp.47-78.
- 정상진, 2018, 『세대 게임』,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정성조, 2019, “‘청년 세대’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pp.12-39.

- 정수남·김정환, 2017, “‘잠재적 청년실업자’들의 방향과 계급적 실천”, 『문화와 사회』, pp.195-264.
- 정중원·신현기·이선영, 2020, “기본소득의 정책피드백 효과 분석 - ‘부분 기본소득’으로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9(4), pp.55-86.
- 조문영, 2018, “청년자본의 유통과 밀레니얼 세대-하기: 젊은 소셜벤처 창업자들에 관한 문화기술지”, 『한국문화인류학』 51(3), pp.309-364.
- 조문영·이민영·김수정·우승현·최희정·정가영·김주은, 2017, 『헬조선 인 앤 아웃: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서성이는 사람, 한국 청년 글로벌 이동에 관한 인류학 보고서』, 서울: 놀민.
- 조문영·장봄, 2016, “‘사람’의 현장, ‘빈민’의 현장: 한 지역주민운동 단체의 성찰적 평가에 관한 협업의 문화기술지”, 『한국문화인류학』 49(1), pp.51-107.
- 조문영·조민서·김지현, 2021, “안전의 열망과 기여의 의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자들의 서사”, 『한국문화인류학』 54(1), pp.307-358.
- 진형익·이미숙, 2020,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경제연구』 33(5), pp.1607-1629.
- 카사사스, 다비드, 2020(2018), 『무조건 기본소득: 모두의 자유를 위한 공동의 재산』, 구유역, 서울: 리얼부커스.
- 판 파레이스·판테르보우트, 2018(2017),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홍기빈 역, 서울: 흐름출판.
- 퍼거슨, 제임스, 2017(2015),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조문영 역, 서울: 여문책.
- 한승현·임다혜·강민아, 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sness)과 행복”, 『한국사회정책』 24(2), pp.87-126.
- Blomberg, H., Kroll, C. and Tarkiainen, L. 2021. Life on basic income: Interview accounts by basic income experiment participants on the effects of the experiment. In Kangas, O., Jauhiainen, S., Simanainen, M., and Ylikännö, M. (eds.). *Experimenting with Unconditional Basic Incom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Davala, S., Jhabvala, R., Mehta, S. K., and Standing, G. 2015.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London · New Delhi · New York · Sydney: Bloomsbury.
- Fitzpatrick, T. 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Palgrave Macmillan.
- Forget, E., Marando, D., Surman, T. and Urban, M. C. 2016. *Pilot Lessons: How to Design 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or Ontario*. Mowat Centre: Ontario’s Voice on Public Policy in University of

Toronto.

- Hamilton, L. and Mulvale, J. P. 2019. “‘Human again’: The (unrealized) promise of basic income in Ontario”. *Journal of Poverty*, 23(7), pp.576-599.
- Handler, J. F. and Babcock, A. S. 2006. “The Failure of Workfare: Another Reason for a Basic Income Guarantee”. *Basic Income Studies*, 1(1), Article 3, pp.1-22.
- Lenczewska, O. and Schwartz, A. M. 2020. “Disagree to agree: forming consensus around basic income in times of political divisiveness”, In Caputo, R. K. and Liu, L.(eds.). *Political Activism and Basic Income Guarantee: International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Past, Present, and Near Future*. Cham: Palgrave Macmillan.
- Mills, C. W. 2000.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ffe, C. 2008. “Basic Income and the Labor Contract”. *Basic Income Studies*, 3(1), Article 4, pp.1-30.
- Roosma, F. and van Oorschot, W. 2020. “Public opinion on basic income: mapping european support for a radical alternative for welfare provisio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0(2), pp.190-205.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Standing, G. 2013. “Why a basic income is necessary for a right to work”, *Basic Income Studies*, 7(2), pp.19-40.
- Standing, G. 2020. *Battling Eight Giants: Basic Income Now*.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Widerquist, K. 2013. *Independence, Propertylessness, and Basic Income: A Theory of Freedom as the Power to Say No*.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Wright, E. O. 2005. “Basic Income as a Socialist Projec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US-BIG Congress, March 4-6, 2005.

Abstracts

**Study on a Categorical Basic Income at a low level:
Experience of th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Seo, Jeonghee

Kunsan National University

Lee, Ji-eun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does the youth basic income at a low level allow the benefited to experience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basic income? Second, does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make them imagine a universal basic income as a transitional path to universal basic incom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as an institutionalized policy in South Korea allows people to experience the elements of basic income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and whether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e youth basic income would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in the end. To this investigation, a total of 28 individual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2 research participants who benefited from the Gyeonggi Youth Basic Income for one year. As a result of the main analysis, first of all, many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the unconditionality and individuality of the youth basic income very favorably. Second,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limited to the category of youth became the logic of legitimacy of the system in itself. Awareness and criticism of youth's lives in Korean society acted as a driving force to justify and internalize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of youth. Third, In terms of the feasibility of universal basic income,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elements of basic income, the experience of the categorical basic income of youth, and the fact that it was insufficient acted in a complex. From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s a policy implication, that a partial basic income would be a better strategy for increasing the viability of a universal basic income rather than a categorical basic income.

Key words : *Basic Income, Youth Basic Income in Gyeonggi Province, Categorical Basic Income, Unconditionality, Individuality, Universality, Viability*

(논문투고일 : 2021. 08. 17 / 심사일 : 2021. 09. 14 / 게재확정일 : 2021. 11. 15)